
‘취장장애’ 진단 및 등록 가이드라인

2026. 6. 29.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취장장애 신설' 의의

-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장애의 종류'에 '취장장애'를 추가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을 개정함('26. 7. 1. 시행 예정)

* 현재 15개 유형(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에 취장장애 추가하여 16개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 가능해짐

□ 취장장애 등록 절차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필요
 - ① (신청인 → 의료기관) 장애 진단 요청
 - ② (의료기관 → 신청인)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 ③ (신청인 → 지자체) 진단서 등 첨부하여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 여부 결정 및 통지
 - ④ (지자체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의뢰
 - ⑤ (국민연금공단 → 지자체) 장애정도심사 결과 통지
 - ⑥ (지자체 → 신청인) 장애인등록 및 통지

□ 취장장애 등록 신청

- (신청 방법)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②온라인 신청* 및 첨부서류 우편 송부
 - *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통해 신청 가능. 단,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필수 첨부서류가 우편으로 도달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
- (첨부 서류) ①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②검사결과지, ③진료기록지(진단일 전 6개월 이상), ④취장이식 받은 경우 수술기록지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췌장장애 진단 요약**

	심한 장애	심하지않은 장애
진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펌프 사용 ② (C-펩타이드 검사) 혈당 140 mg/dL 이상이면서 동시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혈중 C-peptide 0.6 ng/mL 미만 또는 (2)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 0.2 nmol/mmol 미만 ③ (진단 의사)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이면서,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2가지 기준 모두 충족 필요 ① (이식 수술)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인슐린 치료 및 검사 불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췌장이식을 받았더라도 심한장애 기준(좌동)을 충족하면 '심한장애' 등록 가능</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진단 의사) 췌장이식을 시술했거나 진료 중인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진단 시기	<p>(원칙)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이후 진단 가능</p> <p>(예외) ①전체췌장절제 또는 ②2종 이상의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6개월 내에 장애진단 가능</p> <p>* 자가항체(GAD, IA-2, 아연수송체8,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중 2종 이상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재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정 시기) 매 2년마다 ○ (재판정 제외) ①재판정 연속 3회 통과, ②췌장전절제술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정 없음(영구 장애)
C-pep. 검사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진단일 전 6개월 내에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 두 번 모두 위 진단 기준 충족해야 함 ○ (재판정) 진단일 전 3개월 내에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불필요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②검사결과지 ③진료기록지(진단일 전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②수술기록지 (검사결과, 진료기록 불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심한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제출 필요</p> </div>

<참고>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26.7.1일 시행 예정),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6. 뇌장장애 판정기준(신설) 중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에서

(1) 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치료(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 진단한다. 단, 전체뇌장 절제로 장애 고착이 명백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치료 기간과 무관하게 진단할 수 있다.

①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란,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을 지속하는 경우를 말함

*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일 1회 이상의 장기작용(기저) 인슐린’ 및 ‘매 식사 때마다 단기작용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나, 식사 패턴이나 처방 이력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장·단기 작용 인슐린을 다양한 형태로 혼합·조합하여 사용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관련 질의 ①> 혼합형 인슐린 사용 시,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해당 여부

⇒ (답변) 혼합형 인슐린 사용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부득이하게 혼합형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 전문의는 그 사유, 검사 소견 등을 진단서에 기재하고 제한적으로 뇌장장애 진단 가능

<관련 질의 ②> 경구혈당강하제 사용 시, 뇌장장애 해당 여부

⇒ (답변) 경구혈당강하제 복용 여부와 관계 없이, 진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뇌장장애 진단 가능

○ 6개월 이상 기간 경과

- ‘6개월 이상 기간’의 기준일은 진단일(진단서발급일)

-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를 6개월 이상 지속한 후에 뇌장장애 진단 가능

- 다만, ①전체췌장절제로 장애 고착이 명백하거나 ②자가항체 2종* 이상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전이라도 췌장장애 진단 가능
- * 자가항체(GAD, IA-2, 아연수송체8, 인슐린등에 대한 자가항체) 중 2종 이상

<참고 ①> 자가항체 검사 관련

- 이미 치료기간이 6개월 경과한 경우 자가항체 검사 결과 제출 불필요
 - 또한 6개월 경과 전이라도 **단지 췌장장애 등록을 위해 자가항체 검사를 새롭게 실시하는 것은 지양**
- 치료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고, 이미 '자가항체 2종 이상 양성'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그 결과를 활용함이 바람직

<참고 ②> 6개월 치료기간 경과 예외 관련

- ①전체췌장절제 또는 ②자가항체 2종 이상에서 양성 등에 해당하여 6개월 치료기간 경과 전에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경우라도,
 - 진단하는 의사가 3개월 이상 진료한 후에 진단 가능

② 혈당 및 C-펩타이드 검사 기준 충족

○ 진단 가능한 검사 기준

(아래 ①,② 기준 모두 충족 필요)

① 혈액(혈청·혈장) 포도당 농도 140mg/dL 이상

② C-peptide 농도 0.6ng/mL 미만 또는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비율이 0.2nmol/mmol 미만

<참고 ③> C-peptide/Creatinine 비율의 단위 확인 필요!!

- 단회뇨에서 검출된 C-펩타이드와 크레아티닌의 **측정 단위가 각각 'nmol', 'mmol'**인 경우 : C-peptide 값을 Creatinine 값으로 나누어 비율을 구함

* (예시) C-peptide 4.5 nmol, Creatinine 120 mmol인 경우

$$\rightarrow 4.5/120 = 0.0375 \text{ nmol/mmol}$$

- 단회뇨에서 검출된 C-펩타이드와 크레아티닌의 **측정 단위가 각각 'ng/mL', 'mg/dL'**인 경우 : C-peptide 값을 Creatinine 값으로 나눈 후, **단위 변환을 위한 상수(3.74)를 곱함**

* (예시) C-peptide 4.5 ng/mL, Creatinine 120 mg/dL인 경우

$$\rightarrow (4.5/120) \times 3.74 = 0.140 \text{ nmol/mmol}$$

○ 검사 조건

- 비공복 상태에서, 인슐린 투여 중단하지 않고 검사 실시 권장
 - C-펩타이드 검사를 위한 검체(혈액)는 혈당 검사의 검체(혈액)와 동시 채혈 필요
 - C-peptide/Creatinine 검사를 위한 검체(소변)는 혈당검사를 위한 채혈과 동시간대* 소변 채취 필요
- * 1시간 내 권장

<참고 ④> “비공복 상태”에서 검사

- 정상 식사 후 1~2시간 경과한 때에 채혈 및 소변 채취 권장
- 환자에게 검사 당일에 **“공복 상태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도록”** 즉, **“정상 식사 후 방문하도록”** 명확한 사전 안내 필요
- 검사 전에 환자(피검자)에게 ‘공복 상태 여부’를 묻고, 만일 ‘공복일 경우’, 정상 식사하고 2시간 후 재방문 하도록 안내 필요

<관련 질의 ③> “공복 상태” 혈당 140mg/dL 이상인 경우, 검사 조건 충족 여부

⇒ (답변) 비공복 검사를 권장하나, 공복 상태 검사라도 혈당이 140mg/dL 이상이고, 혈당 검사 검체와 C-펩타이드 검사 검체를 동시에 채취했다면 검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 검사 시기 및 횟수

- ① (신규 진단의 경우) ▲진단일 전 6개월 내, ▲3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를 실시해야 하고, ▲2회 모두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함

<참고 ⑤> 1차는 C-펩타이드 혈액 검사, 2차는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검사로 두 번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웨장장애 진단 가능

* 순서가 바뀐 경우에도 웨장장애 진단 가능

- ‘3개월 이상 간격’은, 예컨대 첫 번째 검사일이 ‘n월 m일’이면, 두 번째 검사는 ‘n+3월 m+1일’ 이후에 실시 가능

* (예시) 첫번째 검사일이 2월 5일이면, 두번째 검사는 5월 6일부터 가능

<참고 ⑥> 검사 간격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두 번째 검사 결과 불인정

-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추가검사(3개월 이상 간격)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한, **체장장애 미해당 판정(장애인등록 불가)**

<참고 ⑦> C-펩타이드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횟수

- 체장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혈당, C-펩타이드 등에 대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 **요양급여 지급에 횟수 제한 없음**
- 따라서 **2회 이상의 검사 모두 요양급여 청구 가능**

- ② (재판정 진단의 경우) 진단일 전 3개월 내에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검사 1회만으로 체장장애 진단 가능

③ 진단 주체(진단 의사)

○ 진단의사의 진료과목

-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전문의 및 소속 의료기관은, 소아내분비학회 홈페이지 (www.kspendo.go.kr), "일반인 >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인증병원 검색"에서 확인 가능

<관련 질의 ④> 분과 전문의가 자격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체장장애 진단 가능 여부

⇒ (답변) 분과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받아 '자격 번호가 있는 전문의'라면, 자격 갱신 여부와 관계 없이 체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전문의로 인정

○ 진단의사의 최소 진료기간

- 체장장애 진단을 하는 의사는 진단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환자를 진료해야 함
- ☞ '①전체체장절제' 또는 '②자가항체 2종 이상에서 양성' 등에 해당하여 6개월 치료기간 경과 전에 체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경우라도, 진단하는 의사가 직접 진료한 3개월의 치료 기간 경과 후 진단 가능 (☞ 참고②)

<관련 질의 ⑤> 2026년도 분과 전문의 시험 합격한 경우, '진단하는 전문의의 3개월 치료기간' 산정 방법

⇒ (답변) 분과 전문의 자격증 발급일(시험합격일 아님)부터 취장장애 진단 가능함 다만 '진단하는 전문의의 3개월 이상 치료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분과 자격증 발급 전에 진료한 기간 모두 인정됨

<관련 질의 ⑥> 취장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 치료를 받던 중 의료기관 또는 전문의 사정으로 **주치의(전문의)가 변경된 경우, 3개월 치료기간 산정 방법**

⇒ (답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주치의가 변경된 경우이고, 변경 전·후 주치의가 모두 내분비분과 전문의인 경우, 변경 전 치료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치료기간 산정 가능

○ 진단의사의 진단요건 확인

- 취장장애를 진단하는 의사는 진단 전 6개월 간의 치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통해,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적인 중증 취도부전 상태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취장장애로 진단 가능함

* '인슐린 치료' 및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에 대하여는 진료과목 제한 없음

<참고⑧> 다른 병원 또는 다른 의사의 치료 및 검사 인정 여부

- 중증의 만성 취도부전 환자가 다른 병원 또는 다른 의사가 실시한 치료 또는 검사에서 취장장애 진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치료 또는 검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치료 및 검사를 인정함이 타당함
- 즉, 3개월간 지속적으로 진료한 환자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그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진단 기준(6개월 이상 치료)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또한, 타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취장장애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이 검사를 취장장애 진단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특히, **취장장애 등록 시행 초반에 내분비분과 전문의의 진료예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원 전 다른 의료기관의 치료 및 검사 결과 적극 반영 필요**
- **다만, 다른 의료기관의 치료 및 검사에 오류 등이 발견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추가 치료 및 검사 후에 취장장애를 진단해야 함**

- 진단 전 6개월 간의 치료 및 검사 결과에서 뇌장장애 진단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불가하며, 착오로 진단서가 발급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에서 미해당 판정되므로 장애인등록 불가

<참고⑨> 뇌장장애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단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단서 발급 필요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 ▲1형당뇨병 진단 기준과 뇌장장애 진단 기준이 다름, ▲뇌장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 불가, ▲진단서를 발급하더라도 뇌장장애 등록 불가 등

3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요약

	심한 장애	심하지않은 장애 (뇌장이식 받은 경우)
필수	①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②검사결과지 ③진료기록지(진단일 전 6개월 이상)	①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②수술기록지 (검사결과, 진료기록 불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뇌장이식 받은 사람이 심한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제출 필요 </div>
선택	④뇌장전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기록지 ⑤항체 2종 이상 양성을 받은 경우 검사기록지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기재사항 (☞ 붙임1 작성 예시 참고)

- 진단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내역
- 혈당, C-펩타이드 농도 등 검사 기준 충족 내역
- 위 내용을 근거로 한 췌장장애 소견 등

○ '26.7.1일*부터 발급 가능

* 췌장장애 신설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 시행일: 26.7.1일

- 다만, '26.7.1일 전에 실시한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혈당 및 C-펩타이드 검사 등'을 근거로 췌장장애 진단 가능

<참고⑩> 진단서 유효기간 3개월

- 진단일(진단서발급일)부터 3개월 내에 장애인등록 신청 필요

<참고⑪> 진단일 기준, 최소 치료기간 및 장애인등록 신청 기간



□ 기타 서류

○ 진료기록, 검사기록, 수술기록 등의 사본 제출

-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각 의료기관 보유하는 형태 그대로 사본 제출
- 혈당, C-펩타이드 농도 등의 검사기록지에는 단위를 명확히 기재 필요
- 소견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님(진단서 서식 내에 간략히 기재)

① '심한 장애' 의 경우

○ 재판정 진단 방법

- 원칙적으로, 재판정 진단의 기준과 방법은 신규 진단과 동일
- 다만 신규 진단과 달리, 재판정 진단의 경우는 진단기준 충족하는 1회 검사(진단일 전 3개월 내 검사)만으로 진단 가능

○ 재판정 주기

- 신규 진단 이후 (재판정 제외되지 않는 한) 매 2년마다 재판정

○ 재판정 제외되는 경우

- '심한 장애인' 중 ①혜장전절제술을 받은 경우,
②재판정 연속 3회 통과한 경우에 재판정 제외 가능

② '심하지 않은 장애' 의 경우

- '심하지 않은 장애인(혜장이식의 경우)'은 모두 재판정 제외

<참고⑫> 검사, 진단시기, 재판정 관련 예외 규정 정리

		검사 필요 여부 (혈당, C-펩타이드 등)	진단시기 예외 (6개월 내 진단)	재판정 제외 여부
혜장이식한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	불필요	6개월내 가능	재판정 제외
	심한 장애	필요	6개월 경과 후 가능	재판정 필요
혜장전절제술한 경우		필요	6개월내 가능	재판정 제외
항체 2종 양성한 경우		필요	6개월내 가능	재판정 필요
재판정 연속 3회 통과한 경우		-	-	재판정 제외

1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주요 장애인 복지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 경유), 장애수당(소득기준 충족 필요), 장애인의료비 지원(소득기준 충족 필요),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
- 요금 감면 등 서비스
 - (공과금 등 감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유선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지하철 요금, 국공립 공원 등 입장료
 - (세제 혜택) 소득공제(연말정산), 자동차취득세, 상속세·증여세 등 감면
 - (우선권 등 인정) 공동주택 특별분양, 어린이집 우선 입소(자녀·형제자매), 대학입시 장애인전형, 장애인 일자리 등

1 이용 제한되는 서비스

- (장애인연금) 취장장애 외에 다른 장애유형으로 등록(중복장애)된 경우에만 수급 가능
 - ※ 취장장애 '심한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 심한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되거나, 취장장애 '심하지않은 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 심한장애로 등록 필요
- (장애인주차표지) 이용 불가, 다만 취장장애 외에 다른 장애유형으로 등록(중복장애)된 경우에 종합조사 통해 이용 가능
-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가*
 -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참조
- (고용상 중증 장애) 미해당*
 -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 참조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예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진단 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 상태	장애유형	취장장애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당뇨병/취장염/취장절체/취도부전 등	
	장애 발생 시기	2023년 5월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대학교병원	의사 김○○	진료기간 2023.5.15. ~ 현재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
진단 의사의 소견	<p>※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p> <p>○ 상기 환자는 1형당뇨병으로 진단되어 2023년 5월부터 본원에서 치료중임</p> <p>-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1일 트레시바 18단위(저녁), 피아스프 15-20단위 적용 중임' 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1일 기저 인슐린(란투스) 30단위, 매 식사때마다 초속효성 인슐린(휴마로그) 15단위 적용 중임'</p> <p>○ 아래와 같이 두 번(신규 진단시 두 번, 재판정 진단시 한 번)의 검사 결과를 확인함</p> <p>- (예시1) ① '26.02.03. 혈액포도당 152 mg/dL, C-peptide 0.45 ng/mL</p> <p> ② '26.05.10. 혈액포도당 145 mg/dL, C-peptide 0.42 ng/mL</p> <p>- (예시2) ① '26.03.11. 혈액포도당 142 mg/dL,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0.171 nmol/mmol</p> <p> ② '26.06.26. 혈액포도당 145 mg/dL,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0.186 nmol/mmol</p> <p>(예시3) ① '26.02.03. 혈액포도당 152 mg/dL, C-peptide 0.45 ng/mL</p> <p> ② '26.06.26. 혈액포도당 145 mg/dL,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0.186 nmol/mmol</p>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2년 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 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 의사명
(의사 면허번호)

(서명 또는 인)

(전문의 자격번호 000000)
(분과 전문의 자격번호 000000)

(내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내분비대사분과/내분비분과)

진단기관명

직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람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봉투의 봉합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3.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